

<별표3>

<개정 2001.8.14, 2002.1.24, 2002.8.6, 2003.5.20, 2005.9.7, .2005.10.5, 2005.11.3, 2006.2.15, 2006.4.5, 2006.12.14>

파생금융상품 거래설명서

한 국 증 권 업 협 회

- ♣ 본 설명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업감독규정”에 의거, 귀하가 한국주가지수 200 선물·옵션, 주식옵션 및 스타지수 선물 등의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위험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목 차

I . 투자유의 사항	-----	1
II .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	2
III . 파생금융상품의 매매 등	-----	4
IV . 증권회사의 의무		
- 거래의 통지 및 잔액·잔량확인	-----	7
V . 파생금융상품거래제도의 개요	-----	8
VI . 거래계산의 예	-----	17
VII . 용어해설	-----	21

1. 투자유의사항

한국주가지수 200 선물·옵션, 주식옵션 및 스타지수 선물 등의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있어서 주식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및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2.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3. 한국주가지수 200 선물·옵션, 주식옵션 및 스타지수 선물 등의 상품구조 및 거래를 개시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4.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또는 금융자산관리사 등이 내게 제공하는 당해 선물·옵션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5.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본 거래설명서의 목적은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하려는 고객에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또는 금융자산관리사 등에게 심도 있는 상담을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II.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파생금융상품거래는 투자원금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많은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 시장가격이 귀하의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손실은 위탁증거금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2. 주가지수 및 주식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대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3.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4.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당해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당해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만기시에 매도한 옵션의 행사결제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상승하거나 하락함으로써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으며, 행사결제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손실액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6.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당해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당해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당해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7.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고객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우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8. 시장가격 또는 대용유가증권의 대용가격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2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위탁증거금 수준·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 여부 및 추가납부액 등 기타 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증권회사에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소정의 시한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귀하의 미결제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대용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은 시장가격이 가격제한폭까지 움직였거나 또는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시장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률, 유지증거금률, 현금위탁증거금률 등 기타 관련제도가 소급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위탁증거금 수준등이 변경된 제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단시간 내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참가자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파생금융상품의 매매 등

1. 선물·옵션계좌의 개설

거래소가 개설한 선물시장에 상장된 한국주가지수 200 선물·옵션, 주식옵션 및 스타지수 선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주식계좌와는 별도로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선물·옵션계좌의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당해 약관을 교부할 의무와 파생금융상품거래설명서를 교부하고 충분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일임매매의 제한

고객의 계좌는 별도의 일임매매 약정을 맺지 않았다면 고객의 사전적인 승인이 없는 어떠한 거래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일임매매 약정은 관련 법규에서 그 대상 및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위탁증거금

가. 기본예탁금

- ▶ 계좌를 개설한 후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한 현금 또는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선물·옵션 기본예탁금으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탁증거금

- ▶ 거래소는 한국주가지수 200 선물·옵션, 주식옵션 및 스타지수선물거래와 연계하여 보유중인 선물·옵션 미결제약정의 위험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 위험기준 위탁증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금은 신규위탁증거금액, 선물·옵션순위험위탁증거금액, 당일옵션순매수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① 신규위탁증거금액 : 선물·옵션 각 종목별로 매수·매도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제불이행 위험을 반영한 위탁증거금

- 선물거래 : 위탁금액 × 위탁증거금률
 - 위탁증거금률은 15%를 최저율로 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차등적용 가능
- 선물스프레드 거래 : 위탁수량 × 150만원(스타지수선물의 경우 75만원)
 - 150만원(스타지수선물의 경우 75만원)은 증권회사가 더 높게 정할 수 있음
- 옵션거래의 매수 : 매수위탁금액
- 옵션거래의 매도 : (최대옵션위탁증거금이론가격 또는 조정옵션위탁증거금이론가격 - 옵션위탁증거금 기준가격) × 위탁수량 × (10만원 또는 주식옵션승수)

② 선물·옵션 순위험 위탁증거금액 : 주가지수의 수치 또는 기초주권의 가격이 일정수준 변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상당액

③ 당일 옵션 순매수금액 : 당일에 매매거래가 성립된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한 매수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에서 매도의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 위탁증거금은 현금위탁증거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선물거래시 위탁금액의 5%이상은 현금납부
- 선물스프레드 거래는 전액 대용증권 납부가능
- 옵션매수 거래는 위탁금액 이상의 현금
- 옵션매도 거래는 전액대용증권 납부가능

다. 위탁증거금의 유지 및 추가납부

- ▶ 예탁금이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권회사가 고객의 자금력,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제불이행을 우려하는 때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시한을 다음날 12시내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 ▶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는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 ▶ 소정의 시한 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당해계좌의 미결제약정을 **매도** 또는 **매수**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위탁증거금의 인출

- ▶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과 선물·옵션기본예탁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미결제약정이 없는 경우나 옵션매수미결제약정만 있는 경우로 최저가격으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예탁금의 예외적 인출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신규의 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예탁금을 다시 충족시켜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거래의 일시중단 및 재개

가. 매매거래의 필요적 중단

1) 주가지수선물거래

- ① 주가지수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된 경우 선물시장을 20분간 중단합니다
- ② 선물시장에서 전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보통 최근월물)의 가격이 전일종가보다 5%(스타지수선물의 경우 6%)이상 상승하고 이론가격과의 괴리율이 +3% 이상이거나, 전일종가보다 5%(스타지수선물의 경우 6%)이상 하락하고 이론가격과의 괴리율이 -3% 이하인 경우가 각각 1분 이상 지속하는 경우 선물시장을 5분간 중단합니다. 다만, 주식시장 종료 전 40분전 이후 또는 단일가매매 직후 5분간은 선물거래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2)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시장 및 주가지수선물거래가 필요적 중단이 된 경우에는 주가지수옵션거래도 중단되며,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의 거래가 재개되면 즉시 주가지수옵션거래도 재개됩니다.

3) 주식옵션거래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가 직전거래일의 증가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어 주식시장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된 경우 주식옵션거래를 20분간 중단합니다.

나. 매매거래의 임의적중단

- 1) 주식옵션거래에 있어서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등의 사유발생시 주식옵션거래를 정지하며 재개시 주식옵션거래도 재개합니다.
- 2) 거래소의 선물·옵션시스템 또는 증권회사 선물·옵션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선물·옵션거래를 중단합니다.

다. 매매거래 중단후의 거래의 재개

거래의 재개는 10분간 동시호가 접수 후, 단일가 매매로서 거래를 재개합니다.

IV. 증권회사의 의무 : 거래의 통지 및 잔액·잔량의 확인

1. 거래의 통지

귀하가 서면으로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회사는 고객님의 매매거래 또는 기타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우편,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2. 월별 거래현황 통지

귀하가 서면으로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기타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거래현황 및 잔액·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익월 20일까지 우편,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3. 반기별 계좌잔고현황 통지

귀하가 서면으로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회사는 반기동안 선물·옵션거래 및 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잔량현황을 당해 반기 종료후 20일까지 우편,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현금 및 대용증권의 잔액·잔량합계가 100,000원 미만인 계좌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4. 수시통지

증권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점포간 이관·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및 대용증권 등의 잔액·잔량을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귀하가 통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 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증권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파생금융상품거래제도의 개요

1. 한국주가지수 200 선물

가.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정의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주가지수의 수치와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주가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나. 거래대상지수

거래대상지수는 한국주가지수 200(약칭 KOSPI 200)입니다.

다. 거래대상종목·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 1) 거래대상종목은 결제월(3월, 6월, 9월, 12월)에 따라 4종목으로 구분되며, 각 종목의 최종거래기간은 1년입니다.
- 2) 각 종목의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3, 6, 9, 12월)의 두번째 목요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입니다.
- 3) 새로운 종목의 거래개시일은 선물거래가 종료되는 종목의 최종거래일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입니다.

라. 거래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1) 거래단위

-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 가격 100.00포인트에 1계약을 매수(또는 매도)한 경우 거래금액은 $100.00 \times 50\text{만원} \times 1\text{계약} = 5,000\text{만원}$ 입니다.

2) 호가가격단위

- 호가가격단위는 최소가격변동폭으로서 0.05포인트입니다.
예) 기준가격이 100.00일 경우 호가는 - 99.90, 99.95, 100.00, 100.05, 100.10-로 할 수 있습니다.

마. 거래시간

- 1)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일	거 래 시 간
월 ~ 금	09:00 ~ 15:15

- 2)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일	거 래 시 간
최종거래일	09:00 ~ 14:50

바. 가격제한폭

- 1) 일일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0.10**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적용합니다.
- 2) 따라서,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 되며,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 됩니다.

사. 결제

1) 일일정산

- ▶ 거래의 특성상 손실확대시 **결제불이행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일에 매매체결한 모든 약정수량에 대하여는 당일의 각 약정가격과 거래소가 정하는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당일차금**)에 대하여, 전일의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하여는 당일의 정산가격과 전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갱신차금**)에 대하여 귀하의 손익을 평가하여 일일정산하게 됩니다.

2) 매도·매수 대등수량의 소멸

- ▶ 동일종목의 매도·매수 미결제약정 동시 보유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위탁증거금 징수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계좌내의 동일종목의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에서 대등한 수량은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하게 됩니다.

3) 최종결제

- ▶ 보유중인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지 아니하고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당해 미결제약정의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최종결제차금**)에 대하여 결제하는 것입니다.

4) 결제시한

- ▶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일정산차금 및 최종결제차금은 결제금액이 발생한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2. 한국주가지수 200 옵션

가. 거래대상지수

주가지수옵션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사전에 설정된 주가지수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주가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나. 거래대상지수

거래대상지수는 한국주가지수 200(약칭 KOSPI 200)입니다.

다. 거래대상종목

주가지수옵션거래에 있어서의 거래대상종목은 거래의 유형(풋옵션 또는 콜옵션), 결제월 및 권리행사가격에 따라 선물시장에 상장된 옵션입니다.

라. 결제월·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등

- 1) 옵션결제월은 3월, 6월, 9월, 12월중 2개월과 그 이외의 근월 2개월로서,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입니다.
- 2) 각 옵션결제월의 거래기간은 3월, 6월, 9월, 12월의 4개 결제월은 각각 6개월이며, 그 이외의 결제월은 각각 3개월입니다.
- 3) 새로운 옵션의 거래개시일은 각 옵션의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입니다.

마. 거래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1) 거래단위

- ▶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 ▶ 1계약의 금액은 가격(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 옵션가격이 3.5포인트인 풋옵션 1계약을 매수한 경우 옵션금액은 3.5포인트×10만원×1계약 = 35만원입니다.

2) 호가가격단위

- ▶ 호가가격단위는 **최소가격변동폭**으로서 호가가격이 3포인트 이상인 경우는 **0.05포인트**이며, 3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0.01포인트**입니다.

바. 거래시간

1)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일	거 래 시 간
월 ~ 금	09:00 ~ 15:15

2)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일	거 래 시 간
최종거래일	09:00 ~ 14:50

사. 호가최고·최저한도가격

- 1) 주가지수옵션거래는 가격제한폭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KOSPI200 지수가 **상하 15%**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이내로 호가를 제한합니다.

아. 결제(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수수)

- ▶ 옵션매매에 따른 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에 따른 권리행사차금은 결제 금액이 발생한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자. 권리행사

1) 권리행사가능일

- ▶ 권리행사가능일은 각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입니다.

2) 권리행사의 신고

-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매거래 종료 후 90분 이내에 당해 증권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그러나, 권리행사로 인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행사 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권리행사 됩니다.
- ▶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주식옵션

가. 주식옵션거래의 정의

주식옵션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권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나. 거래대상(기초주권)

거래대상주식은 현재 30개 종목이며, 이는 거래소의 선물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KT	한국전력
현대자동차	LG전자	SK	신한금융지주	삼성SDI	KT&G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LG	삼성화재	강원랜드
LG화학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	삼성전기	GS홀딩스
CJ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삼성증권	대한항공	현대제철

다. 거래대상종목

주식옵션거래에 있어서의 거래대상종목은 거래의 유형(풋옵션 또는 콜옵션), 결제월 및 권리행사가격에 따라 선물시장에 상장된 옵션입니다.

라. 결제월·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등

- 1) 옵션결제월은 당월, 익월, 익익월의 연속 3월과 3,6,9,12월중 근월 1

개월로서,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입니다.

- 2) 각 옵션결제월의 거래기간은 3월, 6월, 9월, 12월의 4개 결제월은 각각 **6개월**이며, 그 이외의 결제월은 각각 **3개월**입니다.
- 3) 새로운 옵션의 거래 개시일은 각 옵션의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입니다.

마. 거래단위 및 호가 가격단위

1) 거래단위

- ▶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 ▶ 1계약의 금액은 옵션가격(프리미엄)에 주식옵션승수인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 ▶ 다만, 기초주권의 분할, 병합,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권리락, 배당락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주식옵션승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호가 가격단위(최소 가격변동폭)

- ▶ 호가가격단위는 옵션가격(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옵션가격	변동폭
1,000원 미만	10원
1,000원 이상 ~ 2,000원 미만	20원
2,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50원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100원
10,000원 이상	200원

바. 거래시간

- 1)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일	거 래 시 간
월 ~ 금	09:00 ~ 15:15

- 2)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일	거 래 시 간
최종거래일	09:00 ~ 14:50

사. 호가최고·최저한도가격

- 1) 주식옵션거래는 가격제한폭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기초주권가격이 상하 15%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이내로 호가를 제한합니다.

아. 결제(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수수)

- ▶ 옵션매매에 따른 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에 따른 권리행사차금은 결제 금액이 발생한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자. 권리행사

1) 권리행사가능일

- ▶ 권리행사가능일은 각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입니다.

2) 권리행사의 신고

-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매거래 종료 후 90분 이내에 당해 증권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그러나, 권리행사로 인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행사 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권리행사 됩니다.
- ▶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결제대금 산식】

가. 옵션거래대금	○ 약정가격 × 약정수량 × 0 - 지불 : 매수자, 수취 : 매도자
나. 권리행사차금	○ 콜옵션 : (결제가격 - 행사가격) × 권리행사수량 × 0 풋옵션 : (행사가격 - 결제가격) × 권리행사수량 × 0 - 지불 : 매도자, 수취 : 매수자

4. 스타지수 선물

가. 스타지수선물거래의 정의

스타지수선물거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 30종목의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 발표되는 스타지수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를 의미합니다.

나. 거래대상종목·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 1) 거래대상종목은 결제월(3월, 6월, 9월, 12월)에 따라 4종목으로 구분되며, 각 종목의 최장거래기간은 1년입니다.
- 2) 각 종목의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3, 6, 9, 12월)의 두번째 목요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입니다.
- 3) 새로운 종목의 거래개시일은 선물거래가 종료되는 종목의 최종거래일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입니다.

다. 거래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1) 거래단위

-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 1계약의 금액은 지수(가격)에 승수인 1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2) 호가가격단위

호가가격단위는 0.50포인트입니다.

라. 거래시간

1)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일	거 래 시 간
월 ~ 금	09:00 ~ 15:15

2)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일	거 래 시 간
최종거래일	09:00 ~ 14:50

마. 가격제한폭

일일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입니다.

바. 결제

1) 일일정산

- ▶ 일일정산이란 매일 선물거래의 각 종목별로 당일에 체결된 약정가격과 전일의 미결제약정을 당일의 정산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일일정산차금의 형태로 정산하게 됩니다.

2) 최종결제

- ▶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하는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최종 스타지수가격(현물가격)으로 최종결제가 이루어집니다.

3) 결제시한

- ▶ 선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일정산차금 및 최종결제차금은 결제금액이 발생한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VI. 거래계산의 예

【주가지수 200 선물거래시 거래계산의 예】

선물 0203(2002년 3월물 선물계약)을 약정가격 100.00p에 10계약을
 매매한 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할 때

1) 매매체결 당일의 일일정산(당일차금)

- ▶ 매매체결 당일의 정산가격이 99.50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당일 차금 2,500,000원을 지급
 $2,500,000\text{원} = (100.00 - 99.50) \times 5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 ▶ 매매체결 당일의 정산가격이 100.50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당일 차금 2,500,000원을 지급
 $2,500,000\text{원} = (100.50 - 100.00) \times 5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2) 매매체결일 이후의 일일정산(갱신차금)

- ▶ 전일의 정산가격이 99.50이고 당일의 정산가격이 100.50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갱신차금 5,000,000원을 지급
 $5,000,000\text{원} = (100.50 - 99.50) \times 5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 ▶ 전일의 정산가격이 99.50이고 당일의 정산가격이 98.50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갱신차금 5,000,000원을 지급
 $5,000,000\text{원} = (99.50 - 98.50) \times 5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3) 최종거래일(2002년 3월 두번째 목요일)의 최종결제(최종결제차금)

-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이 100.00이고 최종결제가격이 100.50인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최종결제차금 2,500,000에 최종거래일의 일일정산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
 $2,500,000\text{원} = (100.50 - 100.00) \times 5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이 100.00이고 최종결제가격이 99.50인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최종결제차금 2,500,000에 최종거래일의 일일정산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
 $2,500,000\text{원} = (100.00 - 99.50) \times 5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주가지수 200 옵션거래시 거래계산 예】

- 풋옵션의 경우

풋 0203 100.00(권리행사가격이 100.00인 2002년 3월물 풋옵션)을
계약당 1.50p에 10계약 매매한 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할 때

1) 매매체결시

- ▶ 옵션매수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옵션매수대금 1,500,000원을 지급
 $1,500,000\text{원} = 1.50\text{p} \times 1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2) 최종거래일(2002년 3월 두번째 목요일)

-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 200)이 105.00인 경우
·권리행사결제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소멸
-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 200)이 95.00인 경우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수자에게 권리행사차금 5,000,000원을 지급
 $5,000,000\text{원} = (100.00 - 95.00) \times 1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 콜옵션의 경우

콜 0209 100.00(권리행사가격이 100.00인 2002년 3월물 콜옵션)을
계약당 2.50p에 10계약 매매한 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할 때

1) 매매체결시

- ▶ 옵션매수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옵션매수대금 2,500,000원을 지급
 $2,500,000\text{원} = 2.50\text{p} \times 1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2) 최종거래일(2002년 3월 두번째 목요일)

-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 200)이 105.00인 경우
·옵션매도자는 옵션매수자에게 권리행사차금 5,000,000원을 지급
 $5,000,000\text{원} = (105.00 - 100.00) \times 100,000\text{원} \times 10\text{계약}$
- ▶ 권리행사결제가격(최종거래일의 KOSPI 200)이 95.00인 경우
·권리행사결제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아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옵션

션은 행사되지 않고 소멸

【주식옵션거래시 거래계산 예】

- 풋옵션의 경우

삼성전자 풋 0509 300,000(권리행사가격이 300,000원인 2005년 9월물 삼성전자 풋옵션)을 계약당 15,000원에 10계약 매매한 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할 때

1) 매매체결시

- 옵션매수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옵션거래대금(프리미엄) 1,500,000원을 지급
 $1,500,000\text{원} = 10\text{계약} \times 15,000\text{원} \times 10$

2) 최종거래일(2005년 9월 두번째 목요일)

- 최종거래일 삼성전자 현물종가가 280,000원인 경우 가정
·풋옵션 매도자가 풋옵션 매수자에게 2,000,000원의 권리행사차금을 지급
 $2,000,000\text{원} = (300,000 - 280,000) \times 10\text{계약} \times 10$

- 콜옵션의 경우

삼성전자 콜 0509 300,000(권리행사가격이 300,000원인 2005년 9월물 삼성전자 콜옵션)을 계약당 15,000원에 10계약 매매한 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할 때

1) 매매체결시

- 옵션매수자는 옵션매도자에게 옵션거래대금(프리미엄) 1,500,000원을 지급
 $1,500,000\text{원} = 10\text{계약} \times 15,000\text{원} \times 10$

2) 최종거래일(2005년 9월 두번째 목요일)

- 최종거래일 삼성전자 현물종가가 320,000원인 경우 가정
·콜옵션 매도자가 콜옵션 매수자에게 2,000,000원의 권리행사차금을 지급
 $2,000,000\text{원} = (320,000 - 300,000) \times 10\text{계약} \times 10$

Ⅶ. 용어해설

- 선물계약(Futures Contract)** :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특정상품을 계약시의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을 말한다. 이 계약의 결제일 이전에 반대매매를 행하거나 또 그 계약의 결제일에 현물에 대한 인·수도를 행함으로써 그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거래형태를 선물거래라 한다.
- 옵션(Option)** : 계약의 매입자가 대상자산을 특정 행사가격에 만기일 또는 만기일 이전에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파생상품
- 주식옵션(Stock option)** : 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에 대하여 행사가격, 결제월 및 최종거래일 등을 정하여 상장하여 매매가 되는 옵션
- 콜옵션(Call option)** : 특정 자산을 정해진 기간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매입자의 권리이며 매입자의 의무는 없다. 하지만 발행자는 콜 매입자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기초자산을 인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 풋옵션(Put option)** : 특정 자산을 정해진 기간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매입자의 권리이며 매입자는 의무는 없다. 하지만 발행자는 풋 매입자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기초자산을 인수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 미국형 옵션, 유럽형 옵션** : 미국형 옵션은 옵션계약 후 만료일 전 아무 때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을 말한다. 유럽형 옵션은 만료일에만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다.
- 위탁증거금(margin)** : 선물·옵션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 선물·옵션기본예탁금** : 미결제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의 매매거래의 위탁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최소금액으로써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기본예탁금적용기준” 에서 정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
 - 신규위탁증거금** : 신규의 매매거래의 위탁시 증권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으로 신규위탁수량에 대한 위탁증거금과 기존의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합계한 금액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

- 3) **유지위탁증거금** : 고객이 자신의 선물·옵션포지션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금
 - 4) **추가증거금** :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증거금을 말하며,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8. **옵션가격(Premium)** : 옵션의 시장가격을 말하며 내재가치와 시간가치의 합이다. 프리미엄은 옵션매수자가 기초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옵션매도자에게 지불하게 된다.
9. **내가격옵션(In-the-money)** : 내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옵션을 말하며 내재가치는 기초자산의 시세와 행사가격을 대비하는 것으로 콜옵션의 경우 기초자산의 시세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옵션을 말하고 풋옵션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행사가격보다 낮은 옵션을 말한다. 특히 내재가치가 클수록 즉 콜옵션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행사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옵션을 풋옵션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행사가격보다 훨씬 하회하는 상태에 있는 옵션을 과내가격(Deep-in-the-money)옵션이라고 한다.
10. **등가격옵션(At-the-money)** : 기초자산의 시세와 행사가격이 같은 옵션
11. **외가격옵션(Out-of-the-money)** : 내재가치가 없는 옵션으로 콜옵션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행사가격보다 낮은 옵션을 말하고, 풋옵션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행사가격보다 높은 옵션을 말한다. 특히, 기초자산의 시세와 행사가격의 차이가 큰 옵션, 즉 콜옵션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행사가격보다 크게 낮은 옵션을 풋옵션에서는 기초자산의 시세가 행사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옵션을 과외가격(Deep-out-of-the-money)옵션이라고 한다.
12. **미결제약정수량(Open interest)** : 어느 특정시점에 현존하는 선물·옵션 계약으로 이미 체결된 선물·옵션 계약이 반대매매에 의해 정리되지 않았거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선물·옵션 계약의 총 계약수를 말한다.
13. **반대매매(Offset)** : 계약마감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사전에 매수(매도)된 선물·옵션 계약에 대하여 만기일전에 동일 상품, 동일 월의 매도(매수)를 함으로써 상쇄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권리행사(Exercise)** : 계약에 의해 옵션매수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으로, 콜옵션보유자는 권리를 행사하여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에 매수하는 것이고, 풋옵션보유자는 권리를 행사하여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에 매도하는 것이다.

15. **자동권리행사** : 만료시에 일정한 수치 이상의 내가격 상태에 있는 옵션에 대하여 옵션보유자가 별도의 권리행사를 표하지 않더라도 거래소가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6. **행사가격(Exercise price or Strike price)** : 옵션매매계약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기로 정한 가격
17. **한국주가지수 200(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 KOSPI 200)**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중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업종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말하며 1990년 1월3일을 100.00 포인트로 하고 있다. 거래소는 매년 6월에 지수구성종목을 정기적으로 심의·변경하며 그밖의 지수구성종목의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또는 합병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수구성종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수구성종목을 변경하는 경우 증권시장지를 통하여 그 변경내용을 공시한다.
18. **주문 및 호가** :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위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 매매거래의 위탁을 하는 것을 주문이라고 하며,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에 의한 위탁매매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매매를 하기 위해 거래소에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호가라고 한다.

선물시장의 주문종류에는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다.

- ① **지정가주문(Limit order)** : 고객이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거래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여 증권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정한 가격 또는 지정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매수의 경우는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 매도의 경우는 지정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주문
- ② **시장가주문(Market order)** : 고객이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 현재 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가격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하는 주문

③ **조건부지정가주문** : 당일의 종가를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주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 주문

④ **최유리지정가주문**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시장에 도달된 때의 가장 유리한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주문

19. **스타지수(Star Index)**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된 우량 3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2일을 1,000p로 하여 2004년 1월 26일부터 산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스타지수는 KOSPI 200 지수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기업규모와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한편 스타지수는 시가총액비중 한도를 10%로 설정함으로써 특정종목의 과도한 영향을 배제하도록 설계하였다.